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## 보도참고자료



보도

2017. 5. 19.(금) 조간

배포

2017. 5. 17.(수)

담당부서	은행감독국	민병진 국장(3145-8020)	곽범준 팀장(3145-8030)
	보험감리실	이창욱 실장(3145-8220)	조정석 팀장(3145-8230)
	상호여전감독국	김태경 국장(3145-7550)	이상민 팀장(3145-7552)
	연금금융실	권오상 실장(3145-5180)	이현석 팀장(3145-7440)
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설인배 국장(3145-5700)	김금태 팀장(3145-5199)

### 제 목 : 금융꿀팁 200선-④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[fine.fss.or.kr](http://fine.fss.or.kr)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마흔아홉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”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### <별첨> 금융꿀팁 200선-④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금융꿀팁 200선-④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<b>(사례1)</b> 신혼부부인 김신랑(32세, 가명)씨와 윤신부(30세, 가명)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.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음</li><li>■ <b>(사례2)</b> 직장인 심준비(35세, 가명)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(32세, 가명)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.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함</li><li>■ <b>(사례3)</b>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(연봉 3천만원)와 김정의씨(연봉 4천만원)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음</li><li>■ <b>(사례4)</b>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(52세, 가명)씨와 최알뜰(50세, 가명)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, 두 사람 모두 <b>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음</b></li><li>■ <b>(사례5)</b>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(40세, 가명, 총 급여 6,000만원)씨와 여교사 오저축(36세, 가명, 총 급여 4,000만원)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,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<b>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음</b>. 그런데 '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(9.9만원)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음</li></ul>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꿀 팁	<p>☞ 맞벌이부부라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해 보세요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5가지 】</b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거래은행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</li> <li>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</li> <li>③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</li> <li>④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</li> <li>⑤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</li> </ul> </div> <p>①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</p> <p>은행들은 고객의 예금, 외환,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,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,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.</p> <p>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됩니다.</p> <p>한편,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「파인(<a href="http://fine.fss.or.kr">fine.fss.or.kr</a>)」에 들어가 “자동이체통합관리(페이인포)”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.</p>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		
	<p><b>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</b></p> <p>일부 보험회사는 <b>부부가 여행자보험, 실손의료보험,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~10%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</b></p> <p>즉, 부부를 <b>피보험자(2인)</b>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<b>할인보험료</b>를 납입하게 됩니다.</p> <p>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<b>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“부부가입 보험료 할인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3 1146 1440 1274"> <tr> <td data-bbox="303 1146 572 127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상상품*</li> <li>▶ 보험회사</li> </ul> </td><td data-bbox="572 1146 1440 1274">         여행자보험, 실손의료보험, 상해보험, 운전자보험 등          KB손보 등 13개사       </td></tr> </table> <p>*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(회사별로 상이)</p> <p><b>③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</b></p> <p><b>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%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됩니다.</b></p> <p>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<b>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.</b>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으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%를 넘어야 하고,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으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%를 넘어야 합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상상품*</li> <li>▶ 보험회사</li> </ul>	여행자보험, 실손의료보험, 상해보험, 운전자보험 등 KB손보 등 13개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상상품*</li> <li>▶ 보험회사</li> </ul>	여행자보험, 실손의료보험, 상해보험, 운전자보험 등 KB손보 등 13개사		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	<p>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(연소득 25%)을 넘기 위해 <b>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</b></p> <p>예를 들면, 남편 연봉이 5천만원*,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*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1,250만원(<math>5,000\text{만원} \times 25\%</math>),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1,000만원(<math>4,000\text{만원} \times 25\%</math>)</p> <p><b>한편,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</b></p> <p>예를 들면, 남편 연봉이 7천만원,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(예: 연 2,500만원)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*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*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: 약 30만원  <math>(\text{카드사용액}(2,500\text{만원}) - \text{연봉}(7,000\text{만원}) \times 25\%) \times \text{신용카드 소득공제율}(15\%) \times \text{소득세율}(지방세 포함} 26.4\%</math></p> <p>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: 약 20만원  <math>(\text{카드사용액}(2,500\text{만원}) - \text{연봉}(2,000\text{만원}) \times 25\%) \times \text{신용카드 소득공제율}(15\%) \times \text{소득세율}(지방세 포함} 6.6\%</math></p> <p>따라서,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 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(환급금)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
	<p>참고로 <b>가족카드</b>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<b>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.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예: 남편(본인)이 발급받은 가족카드(명의자 : 아내)는 남편이 사용하든 아내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인 아내가 받음</li> </ul> <p><b>④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</b></p> <p><b>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</b></p> <p>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<b>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.</b></p> <p>다만, <b>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</b>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참고로 자신의 <b>카드포인트 현황</b>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「파인(<a href="http://fine.fss.or.kr">fine.fss.or.kr</a>)」에 들어가 ‘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’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</b></p> <p>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<b>연금저축상품</b>에 가입하여 <b>연간 납입액</b>에 대해 <b>세액공제(연간 400만원 한도)</b>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)을 초과하면 13.2%가,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) 이하이면 16.5%가 적용됩니다.</p>

제 목	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				
	<p>따라서,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.</p> <p>예를 들면, 총 급여가 5,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, 400만원을 납입하면 52.8만원 (<math>400\text{만원} \times 13.2\%</math>)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반면, 총 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(<math>400\text{만원} \times 16.5\%</math>)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</p> <p>즉,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 9천원의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	

###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

(단위 : 만원)

구분(소득)	종 전		변 경		차이 (A-B)
	납입액	세액공제액(A)	납입액	세액공제액(B)	
A씨(6,000만원)	400	52.8	100	13.2	△39.6
B씨(4,000만원)	100	16.5	400	66.0	49.5
합 계	500	69.3	500	79.2	9.9